



사회적 법익 침해

제 1 장	보도 윤리 위반	42
제 2 장	음란, 포악, 잔인 범죄묘사	43
제 3 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46
제 4 장	성관련 보도	47
제 5 장	자살 관련 보도	49
제 6 장	마약 관련 보도	51
제 7 장	폭력 묘사	53
제 8 장	충격, 혐오 보도	55
제 9 장	기사형 광고	59

제 1 장 | 보도 윤리 위반

사례. 14

의결번호	제2017-226호
매 체 명	뉴스플러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3월 9일자 정치/행정면
기사제목	[단독-3보] 현재 대통령 탄핵 결정, 평의 격론 끝

1. 보도내용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7대 1로 인용, 결정했다. (중략)

평의가 팽팽한 긴장 속에 평의가 계속되면서 최종 7대1로 인용, 결정됐다. 그러나 끝까지 1명의 헌재재판관은 기각 입장을 유지했다.(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심판 결과를 단정하여 허위 보도하였다.

이는 탄핵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 독자들의 판단에 큰 혼란을 야기해 사회 질서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2 장 음란, 포악, 잔인 범죄묘사

사례. 15

의결번호	제2017-768호
매 체 명	뉴스프리존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10월 1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이영학, 음란행위하다...깨어난 김양 목졸라 숨지게 해,.. 생존 '24시간 행적' 풀기 집중

1. 보도내용

「(전략) 이어 드링크제에 넣어둔 수면제를 먹은 A양이 잠이 들자 안방으로 옮겨 놓힌 이영학은 A양의 옷을 벗겼다. 이때부터 이영학의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씨는 A양의 몸을 만지고 더듬는 한편 입맞춤을 하며 음란행위를 즐겼다. 행위 도중 지치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면 이러한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자신이 알몸인 상태로 누워있고, 옆에 전신 문신을 한 이영학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자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했고, 당황한 이영학이 끈 같은 도구로 목을 졸라 A양을 살해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추행을 동반한 살인 사건의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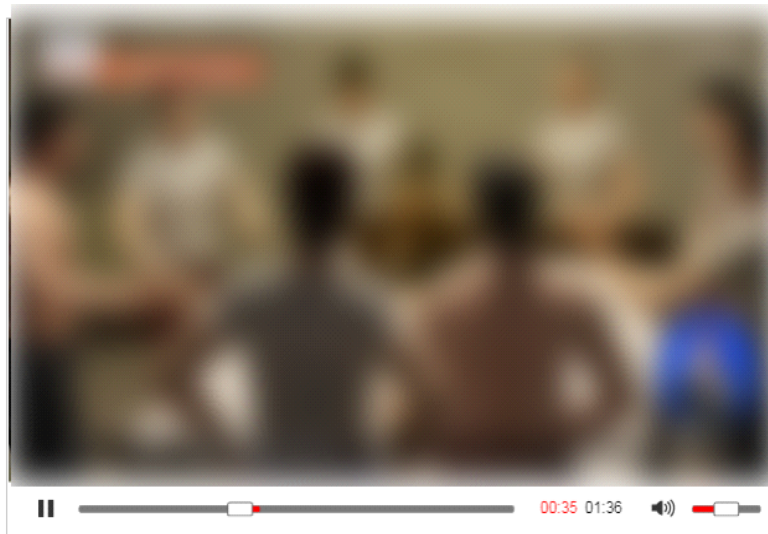
사례. 16

의결번호	제2017-862호
매 체 명	TV조선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11월 6일 07:30 <뉴스 퍼레이드> 프로그램
기사제목	집단 성관계 알선하고 음란물 유포...직업.사진 확인 '회원제'

1. 보도내용

「집단 성관계 알선하고 음란물 유포...직업.사진 확인 '회원제」 제하의 사진

집단 성관계 알선하고 음란물 유포...직업.사진 확인 '회원제'



※ 원 보도에는 블러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흐리게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범죄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3 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례. 17

의결번호	제2017-231호
매 체 명	놀이미디어 오션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2월 28일자 월드뉴스면
기사제목	남친의 이별 통보에 여자는 남친의 다리에 '이것'을 주입했다

1. 보도내용

「(전략) 키키는 ○○○ ○○개를 구매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극소량의 '수은'을 추출해 총 ○ml를 모았다.

그 후 키키는 탄을 불러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탄이 잠에 들자 모아둔 수은을 그의 허벅지에 주입했다. (중략)

경찰에 체포된 키키는 “철저히 조사해 죽지 않고 아플 정도의 수은만 주입했다”며 “다리를 못쓰게 되면 내 곁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은을 사용한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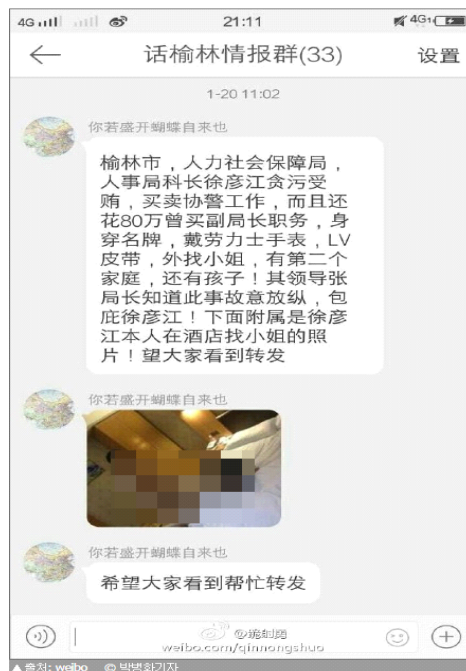
제 4 장 성관련 보도

사례. 18

의결번호	제2017-312호
매 체 명	데일리차이나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2월 21일자 PEOPLE면
기사제목	산시 공무원의 막장 드라마

1. 보도내용

「산시 공무원의 막장 드라마」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최근 중국 산시(陝西)성 위린(榆林)시 인사국 취업과 과장 시앤장(徐彦江)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류(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류 앞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류의 웨이보 계정 니뤄성카이후데즈라이예(你若盛开蝴蝶自来也)에 의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중략)

류는 그가 이혼을 하고 자신과 결혼하길 바랬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류는 시앤장이 자신을 도발하기 위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맺어 핫김에 촬영,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 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현저히 노골적으로 묘사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5 장 | 자살 관련 보도

사례. 19

의결번호	제2017-233호
매 체 명	민중의소리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3월 9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경찰청 소속 경찰관, 스스로 목숨 끊어

1. 보도내용

「(전략) 9일 ○○ ○○군 ○○면 소재 한 창고에서 ○○지방경찰청 소속 ○○○○○과 A(○○) 경위가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직업과 직위, 소속부서, 근무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0

의결번호	제2017-235호
매 체 명	공공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3월 8일자 경제면
기사제목	○○엔지니어링 직원 ○○ 사옥서 투신 사망

1. 보도내용

「설계 감리 전문업체 ○○엔지니어링 직원이 서울 ○○구 본사 사옥에서 투신해 숨졌다.

8일 서울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40분께 ○○구 ○○동 ○○엔지니어링 옥상 20층에서 ○○급 직원 오모(○○)씨가 투신해 사망했다. (중략)

숨진 오씨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4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5억원 가량의 도박 빚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 근무지,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자살자의 유서내용을 적시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바깥세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내면의 자아와 실재(實在)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는 ‘실재’에 대한 열린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는데 ‘실재’는 하나가 아니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바깥 세상과 같이 항상 흐르고 있으며 여러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흐름과 구성을 확인하는 것은 나 자신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의 효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1960년대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은 열광했다. ○○○는 ○○○○○(영혼을 드러내는 물질)이란 이름으로 히피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중략)

○○○는 대개 ○○○ 뒷면 등에 문혀 사용한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가 흡착된 ○○○를 물에 넣어 용해한 다음 마시거나 ○○○를 입안에 넣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다”고 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복용 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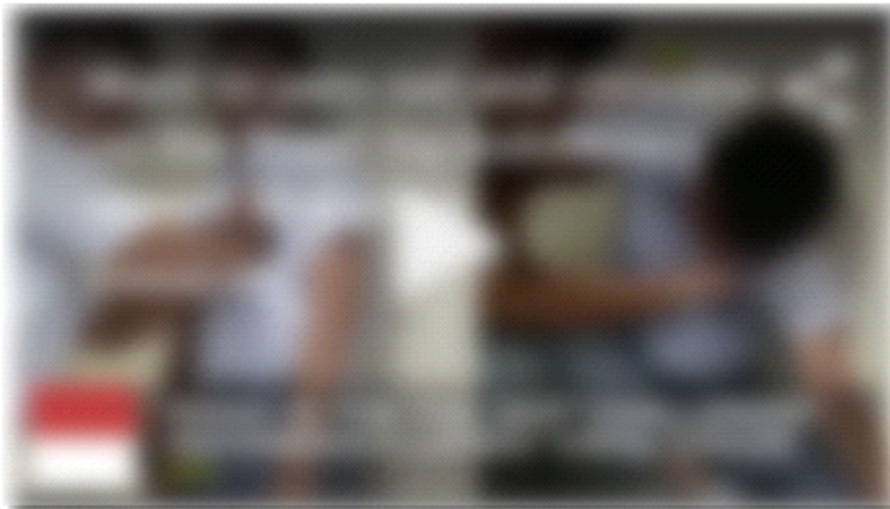
제 7 장 | 폭력 묘사

사례. 22

의결번호	제2017-331호
매 체 명	문화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3월 22일자 국제면
기사제목	“영국에서만 8명 사망” 인도네시아 10대들이 목숨 건 ‘기절 게임’의 정체 (영상)

1. 보도내용

「“영국에서만 8명 사망” 인도네시아 10대들이 목숨 건 ‘기절 게임’의 정체 (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블러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흐리게 처리함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초킹 게임’이 영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간) 대만에 위치한 온라인 미디어 토모 뉴스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초킹 게임(Choking Game)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중략)

이들은 이런 게임을 왜 즐기는 것일까. 게임 경험자의 증언에 의하면 기도를 압박해 뇌의 산소 공급을 막다가 다시 이완시키면 일시적인 마약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대들 사이에서는 위험한 행동에 무모하게 시도하는 행태가 용감하다거나 영웅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게임은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해 자칫하면 뇌에 손상을 주거나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중략)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가 뒤늦게 10대들에게 전해졌지만 아직도 SNS 상에는 ‘○○○○○○○○○○○○○○○○○○○○’라는 해시태그로 해당 게임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심장이나 기도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초킹게임’을 하는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가학적인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8 장 | 충격, 혐오 보도

사례. 23

의결번호	제2017-34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2월 23일자 사건사고면
기사제목	가족 가방 만들기 위해' 산 채로 가족 벗겨지는 악어(영상)

1. 보도내용

「가족 가방 만들기 위해' 산 채로 가족 벗겨지는 악어(영상)」 제하의 영상



유튜브, peta2TV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2일 동물보호단체 'PETA'가 공개한 영성에는 베트남의 한 악어 농장 모습이 담겼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농장 직원들은 철판 탁자 위에 기절한 악어를 올린 채 칼로 목 부위를 잘랐다. 이어 잘린 틈 사이로 쇠 막대기를 집어넣어 악어의 척추를 관통시켰다.

PETA는 내레이션을 통해 “이런 모든 과정이 악어들이 살아있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며 “악어는 아주 조금의 산소로도 몇 시간을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상에는 도살된 후에도 몸을 버둥거리는 악어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악어를 산 채로 가죽 벗기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4

의결번호	제2017-332호
매 체 명	인천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7년 3월 28일자 19면
기사제목	어린이집 한 살배기 전신 화상 수사

1. 보도내용

「어린이집 한 살배기 전신 화상 수사」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어린이집 교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한 살배기 아기가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에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중략)

B군은 당시 커피포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코드 선을 잡아당겼다.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이 B군 몸에 엮어졌고, B군은 목부터 가슴, 배 등에 전치 4주의 화상 진단을 받았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뜨거운 물로 전신 화상을 입은 아동의 피해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어린 아이가 겪은 사고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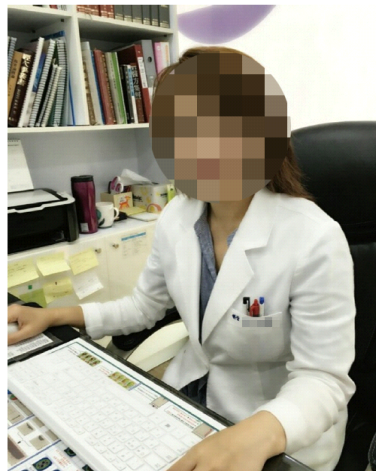
제 9 장 기사형 광고

사례. 25

의결번호	제2017-39호
매 체 명	KNS뉴스통신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2월 2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유발... 여성 한방 다이어트 전문요법으로 치료가능

1. 보도내용

「장〇〇 기자」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최근 대전시 서구 ○○동 ○○○○클리닉 3층에 이○○ 원장의 ‘대전 ○○○ 한의원’이 재개원했다. (중략)

한편 대전 ○○○ 한의원은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방비만치료 검사와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과정으로 한약요법과 특수지방분해침, 카복시테라피, 약침요법을 선보이고 있다. 또 주요현상이 없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통해 비만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